

## 제2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 순 천 시 의 회 의 장

####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3. 3. 8. ~ 3. 13.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13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usrud1419@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 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현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869호
----------	--------

발의연월일 : 2023. 2. 20.

발의자 : 최현아 의원, 김태훈 의원,  
정광현 의원, 정홍준 의원,  
신정란 의원, 박계수 의원,  
김영진 의원, 최병배 의원,  
장경순 의원, 이영란 의원,  
이세은 의원, 나안수 의원

## 1. 개정이유

- 최근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 등에 대한 대비의 일환으로,
- 지진재해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 구성을 고급기술자 이상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위촉·운영하여 시민안전 확보

## 2. 주요내용

### ① 상위법·타법 명칭 개정(본문)

- 지진재해대책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2016.1.25.)

### ② 상위법의 용어표기 연계(본문)

- 중앙본부장, 지역본부장 → 중앙대책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 ③ 행정안전부의 개정 참고조례안(2020.6) 반영(본문)

- (신설) 평가단의 기능 및 활동 내용 신설
- (개정) 평가단원의 구성 인원 변경 및 교육 의무화,  
평가단원의 자격 사항 상향  
(초급기술자 이상→고급기술자 이상)

※ <참고> 타 시군의 위험도 평가단원 자격

- 고급 : 여수, 화순, 영암, 광양
- 초급 : 목포, 나주, 보성, 구례, 영광, 담양, 무안, 장흥, 장성, 해남, 강진, 함평, 곡성, 신안, 완도, 진도, 경북 포항, 경주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붙임 1】

### 순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 이라 한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 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순천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 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 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 (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 ①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전라남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의 절차·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지역대책본부장 및 인근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전라남도 지역대책본부장 및 다른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전라남도 지역대책본부장 및 다른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평가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붙임 2】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조 례 명 : 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9조(경비지원)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5. 작성자 : 순천시의원 최현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3.>
-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 순천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박계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871호
----------	--------

발의연월일 : 2023. 2. 22.

박계수 의원, 오행숙 의원,  
발의자 : 이세은 의원, 유승현 의원,  
김태훈 의원, 장경순 의원,

## 1. 제정이유

-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시민의 권리 등(안 제4조)
- 라. 계획의 수립 및 평가(안 제5조~제6조)
- 마. 교육 및 홍보(안 제7조~제8조)
- 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 등(안 제9조~제10조)

## 3. 제정안: 붙임 1

## 4. 관련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 「지역보건법」

5. 예산상황: 붙임 2(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1】

# 순천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및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순천시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이란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치료, 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 실천을 통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하며, 건강생활 실천의 분야는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등을 말한다.
2. “만성질환”이란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고, 질병부담이 커서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 가.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
  - 나.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
  - 다. 그 밖에 주요 만성질환(골관절염,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암)
3. “만성질환 예방관리”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홍보, 등록관리, 환경구축, 연구 등을 통하여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관련기관”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시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순천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분야별 추진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만성질환 환자 조기 발견, 등록 및 관리, 합병증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관련기관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대책
6. 그 밖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라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계획의 평가)** 시장은 사업계획에 따른 목표 및 성과지표를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받은 시민을 대상으

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홍보) ① 시장은 효율적인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간행물과 동영상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의 홍보 강화를 위해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조 례 명: 순천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10조(재정지원 등)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시책 수립 후 사업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5. 작성자: 순천시의회의원 박계수

---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慢性疾患)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 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참고 2

##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례명	공포일	부서
1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2021. 4. 30.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2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2020. 1. 3.	보건소 건강증진과

#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경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872호
----------	--------

발의연월일 : 2023. 2. 22.

발의자 : 장경순 의원, 박계수 의원,  
이세은 의원, 김태훈 의원,  
이복남 의원, 나안수 의원

## 1. 개정이유

- 장기 재직 공무원의 미사용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를 이월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성실 근무에 대한 보상강화를 통한 직원 사기 앙양

## 2. 주요내용

- 미사용 장기재직휴가 적립(안 제16조)

- (기존) 장기재직 휴가의 소급 및 이월 금지 →

(변경)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있을 때에는 이월 사용

※ 제도 운영 시군 : 20개 도·시·군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북 남원시,  
전북 군산시, 전북 완주군, 전북 무주군, 전북 정읍시, 전북 익산시,  
전북 진안군, 전북 장수군, 경기 연천군, 경기 광명시, 경기 양평군,  
경북 경산시 경북 고령군, 경북 봉화군, 경남 김해시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재직 휴가의 소급 및 이월을 금지한다.”를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있을 때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작성자 :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

---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6조(특별휴가) ① ~ ② (생략)</p> <p>③ 시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u>장기재직 휴가의 소급 및 이월은 금지한다.</u></p> <p>1. ~ 2. (생략)</p> <p>④ ~ ⑨ (생략)</p>	<p>제16조(특별휴가)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u>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있을 때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u></p> <p>1. ~ 2. (현행과 같음)</p> <p>④ ~ ⑨ (현행과 같음)</p>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21. 11. 30., 2021. 12. 3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19. 12. 31.>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2021. 11. 30.>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31., 2021. 12. 31.>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2019. 12. 31.>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2019. 12. 31.>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0. 20.>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  
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  
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2021. 11. 30.>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7은 제7조의8로 이동 <2019. 4. 16.>]



6급상당이하 계	2	1	1			
<b>연구직 계(④)</b>	<b>7</b>	<b>7</b>				
연구관	1				1	
연구사	6	6				
<b>지도직 계(⑤)</b>	<b>29</b>	<b>29</b>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2	1	1			
<b>7</b>	<b>7</b>				
1				1	
6	6				
<b>29</b>	<b>29</b>				
2			2		
27	27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참고

7. 사전예고 결과

-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 생략  
→ 행정내부적인 사항 규정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2. 28.(가족복지과-662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2. 28(기획예산실-283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해당 없음

#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623명” 을 “1,629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5명” 을 “41명”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b>총 계</b>	<b>1,629</b>	<b>1,629</b>				
<b>정무직 계</b>	<b>1</b>	<b>1</b>				
시 장	1	1				
<b>일반직 계</b>	<b>1,589</b>	<b>1,589</b>				
3급	1	1				
4급	11	5	1	2	3	
5급	82	37	3	8	10	24
<b>6급 이하 계</b>	<b>1,495</b>	<b>1,495</b>				
<b>별정직 계</b>	<b>3</b>	<b>3</b>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2	1	1			
<b>연구직 계</b>	<b>7</b>	<b>7</b>				
연구관	1				1	
연구사	6	6				
<b>지도직 계</b>	<b>29</b>	<b>29</b>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순천시(이하 “시” 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1,623명</u>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u>1,629명</u>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u>35명</u>							2. ----- <u>41명</u>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동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동
총 계	<u>1,623</u>	<u>1,623</u>					총 계	<u>1,629</u>	<u>1,629</u>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u>1,583</u>	<u>1,583</u>					일반직 계	<u>1,589</u>	<u>1,589</u>				
3급	1	1					3급	1	1				
4급	11	5	1	2	3		4급	11	5	1	2	3	
5급	82	37	3	8	10	24	5급	82	37	3	8	10	24
6급 이하 계	<u>1,489</u>	<u>1,489</u>					6급 이하 계	<u>1,495</u>	<u>1,495</u>				
별정직 계	3	3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1	1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2	1	1				6급 상당 이하 계	2	1	1			
연구직 계	7	7					연구직 계	7	7				
연구관	1				1		연구관	1				1	
연구사	6	6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9	29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2			2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지도사	27	27				

#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정원 증감내역

(단위 : 명)

합 계	일반직			비고
	4급	5급	6급 이하	
6	-	-	6	

## 2. 비용 소요내역

○ 소요비용 증감내역

(단위 : 원)

구분	1인당 소요비용		증감인원	총 액	비고
합계			6명	345,161,460	
일반 직	6급	83,101,280	6명	345,161,460	26호봉
	7급	65,798,900			17호봉
	8급	45,673,180			7호봉
	9급	35,534,310			4호봉
		평균 57,526,910			

○ 직급별 단가내역

(단위 : 원)

구분	일반직					비 고
	5급(30호봉)	6급(26호봉)	7급(17호봉)	8급(7호봉)	9급(4호봉)	
총계(①+②+③)	93,089,820	83,101,280	65,798,900	45,673,180	35,534,310	
①인건비(A+B)	74,853,060	67,614,920	52,451,740	35,510,090	27,643,050	
·기본급(A)	59,086,680	49,797,600	39,530,400	26,505,600	21,069,600	
·수당(B)	15,766,380	17,817,320	12,921,340	9,004,490	6,573,450	
- 정액급식비	1,680,000	1,680,000	1,680,000	1,680,000	1,680,000	
- 명절휴가비	5,908,680	4,979,760	3,953,040	2,650,560	2,106,960	
- 연가보상비	1,693,800	1,427,520	1,133,180	759,810	603,990	
- 정근수당	4,923,900	4,149,800	3,294,200	1,546,160	526,740	
- 정근수당가산금	1,560,000	1,560,000	960,000	600,000		
- 시간외수당(정액분)		1,440,240	1,300,920	1,167,960	1,055,760	
- 기타수당(대민활동비)		600,000	600,000	600,000	600,000	
②직급보조비	4,200,000	1,980,000	1,860,000	1,740,000	1,740,000	
③이전경비	14,036,760	13,506,360	11,487,160	8,423,090	6,151,260	
- 성과상여금	4,584,840	4,584,840	3,898,040	3,283,130	2,256,820	
- 연금부담금	6,660,960	6,400,080	5,416,640	3,651,480	2,783,840	
- 국민건강보험금	2,531,520	2,287,080	1,970,520	1,350,120	1,007,400	
- 장기요양보험금	259,440	234,360	201,960	138,360	103,200	

3. 협의사항 : 해당없음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5. 작성자

○ 행정안전국 총무과 과장 유형익(☎ 749-5457)  
인사팀장 백경원(☎ 749-5632)

## 참고

## 관련 법령

###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부칙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 순천시 이동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88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3. 3. 6.

## 1. 개정이유

- 2023년 상반기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지역의 통반 조정 및 자연마을 반 분리 요구에 따른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순천시 이동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별표 1] 상사면 관할구역 : 1개 반 신설
  - 연동리 내 제2반(오실) : 전원주택 단지 조성
- [별표 1] 서면 관할구역 : 2개리, 9개반 신설
  - 포레나순천 아파트 : 건보2리 ~ 3리
- [별표 2] 삼산동 관할구역 : 6개동 24개반 신설
  - 용당 한양수자인 아파트 : 45통 ~ 48통(4개동 14개반)
  - 가곡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 49통 ~ 50통(2개동 10개반)
- [별표 2] 조곡동 관할구역 : 2개동 10개반 신설
  - e편한세상 어반타워 아파트 : 18통 ~ 19통

## 3. 개정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연간 51,400천원(비용추계서 첨부)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2. 3. ~ 2. 23.)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2. 3.(가족복지과-379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3. 1. 31.(자치행정과-1322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2. 3.(기획예산실-145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2. 3.(순천시 공고 제2023-289호)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상사면 연동리에 1개 반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서면 건보리에 2개리를 신설하여 아래와 같이 3개리로 하고 각각의 계 및 총계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
상사면	오곡	오곡 연동	제2반 제1반 <u>제2반</u> 제1반	현행과 같음 연동 <u>오실</u> 현행과 같음
	마륜	마륜		
⋮	⋮	⋮	⋮	⋮
계	11	25	<u>31</u>	
⋮	⋮	⋮	⋮	⋮
서면	선평	선평3 <u>건보1</u>  <u>건보2</u>	제2반 제1반  <u>제1반</u>  <u>제2반</u> <u>제3반</u> <u>제4반</u> <u>제5반</u>	현행과 같음 건보 <u>포레나순천 아파트</u>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u>건보3</u>	<u>제1반</u>  <u>제2반</u> <u>제3반</u> <u>제4반</u>	<u>포레나순천 아파트</u> 106동 107동 108동 109동
		신흥	제1반	현행과 같음
⋮	⋮	⋮	⋮	⋮
계	14	<u>69</u>	<u>119</u>	
⋮	⋮	⋮	⋮	⋮
총계	163	<u>476</u>	<u>745</u>	

별표 2 중 삼산동 44통 다음에 45통, 46통, 47통, 48통, 49통 50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조곡동 17통 다음에 18통, 19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삼산동	44	6	현행과 같음
	<u>45</u>	<u>1</u>	<u>용당 한양수자인 아파트 101동</u>
		<u>2</u>	<u>102동</u>
		<u>3</u>	<u>103동</u>
	<u>46</u>	<u>1</u>	<u>용당 한양수자인 아파트 104동</u>
		<u>2</u>	<u>105동</u>
		<u>3</u>	<u>106동</u>
		<u>4</u>	<u>107동</u>
	<u>47</u>	<u>1</u>	<u>용당 한양수자인 아파트 108동, 상가동</u>
		<u>2</u>	<u>109동</u>
		<u>3</u>	<u>110동</u>
	<u>48</u>	<u>1</u>	<u>용당 한양수자인 아파트 111동</u>
		<u>2</u>	<u>112동</u>
		<u>3</u>	<u>113동</u>
		<u>4</u>	<u>114동</u>
	<u>49</u>	<u>1</u>	<u>가곡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101동, 109동, 상가동</u>
		<u>2</u>	<u>102동</u>
		<u>3</u>	<u>103동</u>
		<u>4</u>	<u>104동</u>
		<u>5</u>	<u>105동</u>
<u>50</u>	<u>1</u>	<u>가곡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106동</u>	
	<u>2</u>	<u>107동</u>	
	<u>3</u>	<u>108동</u>	
	<u>4</u>	<u>110동</u>	
	<u>5</u>	<u>111동</u>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조곡동	∴ 17 <u>18</u>	∴ 4 <u>1</u> <u>2</u> <u>3</u> <u>4</u> <u>5</u>	∴ 현행과 같음 <u>e편한세상 어반타워 아파트 101동</u> <u>102동</u> <u>103동, 상가동</u> <u>104동</u> <u>105동</u>
	<u>19</u>	<u>1</u> <u>2</u> <u>3</u> <u>4</u> <u>5</u>	<u>e편한세상 어반타워 아파트 106동</u> <u>107동</u> <u>108동</u> <u>109동</u> <u>110동</u>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읍·면지역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					[별표 1] 읍·면지역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	∴	∴	∴	∴	∴
상사면	오곡	오곡	제2반	현행과 같음	상사면	오곡	오곡	제2반	현행과 같음
		연동	제1반	연동			연동	제1반	연동
			<신설>	<신설>				<u>제2반</u>	<u>오실</u>
	마륵	마륵	제1반	현행과 같음		마륵	마륵	제1반	현행과 같음
∴	∴	∴	∴	∴	∴	∴	∴	∴	∴
계	11	25	30	∴	계	11	25	31	∴
∴	∴	∴	∴	∴	∴	∴	∴	∴	∴
서 면	선평	선평3	제2	현행과 같음	서 면	선평	선평3	제2	현행과 같음
		건보	제1반	건보			<u>건보1</u>	제1반	건보
		<신설>	<신설>	<신설>			<u>건보2</u>	<u>제1반</u>	<u>포레나순천 아파트</u> <u>101동</u>
			<신설>	<신설>				제2반	<u>102동</u>
			<신설>	<신설>				제3반	<u>103동</u>
			<신설>	<신설>				제4반	<u>104동</u>
			<신설>	<신설>				제5반	<u>105동</u>
		<신설>	<신설>	<신설>			<u>건보3</u>	제1반	<u>포레나순천 아파트</u> <u>106동</u>
			<신설>	<신설>				제2반	<u>107동</u>
			<신설>	<신설>				제3반	<u>108동</u>
			<신설>	<신설>				제4반	<u>109동</u>
		신흥	제1반	현행과 같음			신흥	제1반	현행과 같음
∴	∴	∴	∴	∴	∴	∴	∴	∴	∴
계	14	67	100	∴	계	14	69	119	∴
∴	∴	∴	∴	∴	∴	∴	∴	∴	∴
총계	163	474	735	∴	총계	163	476	745	∴
				∴					∴

현행				개정안			
[별표 2]				[별표 2]			
동 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 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				⋮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	⋮	⋮	⋮
삼산동	44	6	현행과 같음	삼산동	44	6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신설>		45	1	용당 한양수자인 아파트 101동
		<신설>	<신설>			2	102동
		<신설>	<신설>			3	103동
	<신설>	<신설>	<신설>		46	1	용당 한양수자인 아파트 104동
		<신설>	<신설>			2	105동
		<신설>	<신설>			3	106동
		<신설>	<신설>			4	107동
	<신설>	<신설>	<신설>		47	1	용당 한양수자인 아파트 108동, 상가동
		<신설>	<신설>			2	109동
		<신설>	<신설>			3	110동
	<신설>	<신설>	<신설>		48	1	용당 한양수자인 아파트 111동
		<신설>	<신설>			2	112동
		<신설>	<신설>			3	113동
		<신설>	<신설>			4	114동
	<신설>	<신설>	<신설>		49	1	가곡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101동, 109동, 상가동
		<신설>	<신설>			2	102동
		<신설>	<신설>			3	103동
		<신설>	<신설>			4	104동
		<신설>	<신설>			5	105동
	<신설>	<신설>	<신설>		50	1	가곡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106동
		<신설>	<신설>			2	107동
		<신설>	<신설>			3	108동
		<신설>	<신설>			4	110동
		<신설>	<신설>			5	111동
⋮	⋮	⋮	⋮	⋮	⋮	⋮	⋮
조곡동	17	4	현행과 같음	조곡동	17	4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신설>		18	1	e편한세상 어반타워 아파트 101동
		<신설>	<신설>			2	102동
		<신설>	<신설>			3	103동, 상가동
		<신설>	<신설>			4	104동
		<신설>	<신설>			5	105동
	<신설>	<신설>	<신설>		19	1	e편한세상 어반타워 아파트 106동
		<신설>	<신설>			2	107동
		<신설>	<신설>			3	108동
		<신설>	<신설>			4	109동
		<신설>	<신설>			5	110동
⋮				⋮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요인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13조(실변상) 및 제14조의2(사기진작)
  - 이·통·반장 임명(10개 리·통, 44개 반)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

##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지급기준과 사업량을 바탕으로 함.
- 원활한 이·통·반 관리를 위한 이·통·반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이·통·반장 증감 현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비고
이통장	872	882	10	
반 장	2,406	2,450	44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257,000	-51,400	-51,400	-51,400	-51,400	-51,400
세입(a)	-	-	-	-	-	-
세출(b)	257,000	51,400	51,400	51,400	51,400	51,40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257,000	51,400	51,400	51,400	51,400	51,400
시 비	257,000	51,400	51,400	51,400	51,400	51,400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소요예산 : 51,400천원/연간(이·통장 10명, 반장 44명)

### ○ 산출기초

- 이·통장 기본수당 :  $300,000\text{원} \times 12\text{월} \times 10\text{명} = 36,000,000\text{원}$
- 이·통장 상여금 :  $300,000\text{원} \times 2\text{회(설, 추석)} \times 10\text{명} = 6,000,000\text{원}$
- 이·통장 회의참석 수당 :  $20,000\text{원} \times 2\text{회(월)} \times 12\text{월} \times 10\text{명} = 4,800,000\text{원}$
- 이·통장 통신비 :  $20,000\text{원} \times 12\text{월} \times 10\text{명} = 2,400,000\text{원}$
- 반장 수당 :  $25,000\text{원} \times 2\text{회(설, 추석)} \times 44\text{명} = 2,200,000\text{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 8. 작성자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과장 최영화(☎ 749-5453)  
자치행정팀장 이재환(☎ 749-5625)

# 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88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3. 3. 6.

## 1. 제정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 (안 1조 목적)

- 재난 발생 시에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순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 ○ (안 3조 지원범위)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 ○ (안 6조 목적 외 사용금지)

-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은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

### ○ (안 7조 포상)

- 모범적으로 활동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 3. 제정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2. 9. ~ 2. 28.)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2. 15.(가족복지과-517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2. 7.(기획예산실-168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2. 8.(순천시 공고 제2023-351호)

# 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에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순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순천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반환을 명해야 한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도 감독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5.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7조(포상)** 시장은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의안명 : 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안 제3조)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소요

5. 작성자

○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과장 김경만(☎ 749-5466)  
사회재난팀장 이수경(☎ 749-3046)

---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참고

## 관련 법령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경비부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27조의2(경비지원) ① (생략)

② 시장·군수는 소방서 시·군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888호
----------	--------

○ 제출자 : 순천시 장

○ 제출일 : 2023. 3. 6.

## 1. 개정이유

- 화장시설 이용료를 최소한의 행정이용원가를 부담시킴으로써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용료 현실화
- 화장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세분화하여 공공서비스의 이용 편의 제공

## 2. 주요내용

- 화장시설 사용자의 자격 중 「특례」 사항 신설(안 제29조제2호)
  -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미만 두고 있는 사람
  - 사망자 등록기준지가 시인 경우
- 화장시설 사용자의 자격 중 「관외」 사항 개정(안 제29조제3호나목)
  - 현행 ‘관외’ 자격인 사망자의 등록 기준지가 시인 경우를 ‘특례’로 변경하고,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당시 관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개정
- 순천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개정(별표1)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함

## 3. 개정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참고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 25. ~ 2. 14.)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1. 17.(가족복지과-207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1. 13.(기획예산실-64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1. 25.(순천시 공고 제2023-182호)

#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당시 관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특례

가.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미만 두고 있는 사람

나. 사망자 등록기준지가 시인 경우

별표 1 화장시설의 15세 이상의 관내란 다음에 화장시설의 15세 이상의 특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례	ㄴ	405,000	
----	---	---------	--

별표 1의 화장시설의 15세 이상의 관외의 사용료란 중 “405,000” 을 “700,000” 으로 하고, 같은 란 화장시설의 15세 미만의 관내란 다음에 특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례	ㄴ	202,000	
----	---	---------	--

별표 1의 화장시설의 15세 미만의 관외의 사용료란 및 같은 란의 개장유골의 관외의 사용료란 중 “202,000” 을 각각 “350,000”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9조(화장시설 사용자의 자격) 화장시설의 사용자격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u>&lt;신설&gt;</u></p> <p>2. 관외</p> <p>가. (생략)</p> <p>나. 사망자의 등록 기준지가 시인 경우</p> <p>다. ~ 바. (생략)</p> <p>[별표 1] &lt;개정 2017.07.31, 2020.06.01&gt;</p> <p style="text-align: center;"><b>순천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b> (제6조, 제18조, 제27조의4, 제30조, 제31조의2, 제3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종별</th> <th>구분</th> <th>단위</th> <th>사용료, 관리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공원묘지</td> <td rowspan="2">묘지 6.61㎡</td> <td>관내</td> <td>기 1,030,000*</td> <td rowspan="2">* 설치비 별도 연장의 경우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1/2 적용</td> </tr> <tr> <td>관외</td> <td>" 1,600,000</td> </tr> <tr> <td rowspan="2">자연장지</td> <td rowspan="2">묘지 0.25㎡</td> <td>관내</td> <td>" 400,000</td> <td></td> </tr> <tr> <td>관외</td> <td>" 700,000</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종별</th> <th>구분</th> <th>단위</th> <th>사용료</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2">화장시설</td> <td rowspan="3">15세 이상</td> <td>관내</td> <td>구 58,000</td> <td></td> </tr> <tr> <td>특례</td> <td>" 405,000</td> <td></td> </tr> <tr> <td>관외</td> <td>" 700,000</td> <td></td> </tr> <tr> <td rowspan="3">15세 미만</td> <td>관내</td> <td>" 45,000</td> <td></td> </tr> <tr> <td>특례</td> <td>" 202,000</td> <td></td> </tr> <tr> <td>관외</td> <td>" 350,000</td> <td></td> </tr> <tr> <td rowspan="2">개장유골</td> <td>관내</td> <td>" 32,000</td> <td></td> </tr> <tr> <td>관외</td> <td>" 202,000</td> <td></td> </tr> <tr> <td rowspan="2">죽은 태아</td> <td>관내</td> <td>" 26,000</td> <td></td> </tr> <tr> <td>관외</td> <td>" 135,000</td> <td></td> </tr> <tr> <td rowspan="2">유택동산</td> <td>관내</td> <td>" 10,000</td> <td></td> </tr> <tr> <td>관외</td> <td>" 10,000</td> <td></td> </tr> <tr> <td rowspan="2">봉안당</td> <td rowspan="2">봉안</td> <td>관내</td> <td>기 180,000</td> <td></td> </tr> <tr> <td>관외</td> <td>" 600,000</td> <td></td> </tr> </tbody> </table>	종별	구분	단위	사용료, 관리비	비고	공원묘지	묘지 6.61㎡	관내	기 1,030,000*	* 설치비 별도 연장의 경우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1/2 적용	관외	" 1,600,000	자연장지	묘지 0.25㎡	관내	" 400,000		관외	" 700,000		종별	구분	단위	사용료	비고	화장시설	15세 이상	관내	구 58,000		특례	" 405,000		관외	" 700,000		15세 미만	관내	" 45,000		특례	" 202,000		관외	" 350,000		개장유골	관내	" 32,000		관외	" 202,000		죽은 태아	관내	" 26,000		관외	" 135,000		유택동산	관내	" 10,000		관외	" 10,000		봉안당	봉안	관내	기 180,000		관외	" 600,000		<p>제29조(화장시설 사용자의 자격) ----- -----.</p> <p>1. (현행과 같음)</p> <p>2. 특례</p> <p>가.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미만 두고 있는 사람</p> <p>나. 사망자 등록기준지가 시인 경우</p> <p>3.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당시 관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p> <p>다. ~ 바. (현행과 같음)</p> <p>[별표 1] &lt;개정 2017.07.31, 2020.06.01&gt;</p> <p style="text-align: center;"><b>순천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b> (제6조, 제18조, 제27조의4, 제30조, 제31조의2, 제3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종별</th> <th>구분</th> <th>단위</th> <th>사용료, 관리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공원묘지</td> <td rowspan="2">묘지 6.61㎡</td> <td>관내</td> <td>기 1,030,000*</td> <td rowspan="2">* 설치비 별도 연장의 경우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1/2 적용</td> </tr> <tr> <td>관외</td> <td>" 1,600,000</td> </tr> <tr> <td rowspan="2">자연장지</td> <td rowspan="2">묘지 0.25㎡</td> <td>관내</td> <td>" 400,000</td> <td></td> </tr> <tr> <td>관외</td> <td>" 700,000</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종별</th> <th>구분</th> <th>단위</th> <th>사용료</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2">화장시설</td> <td rowspan="3">15세 이상</td> <td>관내</td> <td>구 58,000</td> <td></td> </tr> <tr> <td>특례</td> <td>" 405,000</td> <td></td> </tr> <tr> <td>관외</td> <td>" 700,000</td> <td></td> </tr> <tr> <td rowspan="3">15세 미만</td> <td>관내</td> <td>" 45,000</td> <td></td> </tr> <tr> <td>특례</td> <td>" 202,000</td> <td></td> </tr> <tr> <td>관외</td> <td>" 350,000</td> <td></td> </tr> <tr> <td rowspan="2">개장유골</td> <td>관내</td> <td>" 32,000</td> <td></td> </tr> <tr> <td>관외</td> <td>" 350,000</td> <td></td> </tr> <tr> <td rowspan="2">죽은 태아</td> <td>관내</td> <td>" 26,000</td> <td></td> </tr> <tr> <td>관외</td> <td>" 135,000</td> <td></td> </tr> <tr> <td rowspan="2">유택동산</td> <td>관내</td> <td>" 10,000</td> <td></td> </tr> <tr> <td>관외</td> <td>" 10,000</td> <td></td> </tr> <tr> <td rowspan="2">봉안당</td> <td rowspan="2">봉안</td> <td>관내</td> <td>기 180,000</td> <td></td> </tr> <tr> <td>관외</td> <td>" 600,000</td> <td></td> </tr> </tbody> </table>	종별	구분	단위	사용료, 관리비	비고	공원묘지	묘지 6.61㎡	관내	기 1,030,000*	* 설치비 별도 연장의 경우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1/2 적용	관외	" 1,600,000	자연장지	묘지 0.25㎡	관내	" 400,000		관외	" 700,000		종별	구분	단위	사용료	비고	화장시설	15세 이상	관내	구 58,000		특례	" 405,000		관외	" 700,000		15세 미만	관내	" 45,000		특례	" 202,000		관외	" 350,000		개장유골	관내	" 32,000		관외	" 350,000		죽은 태아	관내	" 26,000		관외	" 135,000		유택동산	관내	" 10,000		관외	" 10,000		봉안당	봉안	관내	기 180,000		관외	" 600,000	
종별	구분	단위	사용료, 관리비	비고																																																																																																																																																			
공원묘지	묘지 6.61㎡	관내	기 1,030,000*	* 설치비 별도 연장의 경우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1/2 적용																																																																																																																																																			
		관외	" 1,600,000																																																																																																																																																				
자연장지	묘지 0.25㎡	관내	" 400,000																																																																																																																																																				
		관외	" 700,000																																																																																																																																																				
종별	구분	단위	사용료	비고																																																																																																																																																			
화장시설	15세 이상	관내	구 58,000																																																																																																																																																				
		특례	" 405,000																																																																																																																																																				
		관외	" 700,000																																																																																																																																																				
	15세 미만	관내	" 45,000																																																																																																																																																				
		특례	" 202,000																																																																																																																																																				
		관외	" 350,000																																																																																																																																																				
	개장유골	관내	" 32,000																																																																																																																																																				
		관외	" 202,000																																																																																																																																																				
	죽은 태아	관내	" 26,000																																																																																																																																																				
		관외	" 135,000																																																																																																																																																				
	유택동산	관내	" 10,000																																																																																																																																																				
		관외	" 10,000																																																																																																																																																				
봉안당	봉안	관내	기 180,000																																																																																																																																																				
		관외	" 600,000																																																																																																																																																				
종별	구분	단위	사용료, 관리비	비고																																																																																																																																																			
공원묘지	묘지 6.61㎡	관내	기 1,030,000*	* 설치비 별도 연장의 경우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1/2 적용																																																																																																																																																			
		관외	" 1,600,000																																																																																																																																																				
자연장지	묘지 0.25㎡	관내	" 400,000																																																																																																																																																				
		관외	" 700,000																																																																																																																																																				
종별	구분	단위	사용료	비고																																																																																																																																																			
화장시설	15세 이상	관내	구 58,000																																																																																																																																																				
		특례	" 405,000																																																																																																																																																				
		관외	" 700,000																																																																																																																																																				
	15세 미만	관내	" 45,000																																																																																																																																																				
		특례	" 202,000																																																																																																																																																				
		관외	" 350,000																																																																																																																																																				
	개장유골	관내	" 32,000																																																																																																																																																				
		관외	" 350,000																																																																																																																																																				
	죽은 태아	관내	" 26,000																																																																																																																																																				
		관외	" 135,000																																																																																																																																																				
	유택동산	관내	" 10,000																																																																																																																																																				
		관외	" 10,000																																																																																																																																																				
봉안당	봉안	관내	기 180,000																																																																																																																																																				
		관외	" 600,000																																																																																																																																																				

#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요인

○ 「별표 1」 순천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 2. 비용추계의 전제

○ 공설장사시설(공원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봉안당) 사용료 및 시설 운영비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4,406,629	759,214	1,013,639	947,997	879,074	806,705
세입(a)	11,315,400	2,009,528	2,326,468	2,326,468	2,326,468	2,326,468
세출(b)	6,908,771	1,250,314	1,312,829	1,378,471	1,447,394	1,519,763

### 3-1. 세입 비용추계(제19조, 제27조의4, 제30조,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계	11,315,400	2,009,528	2,326,468	2,326,468	2,326,468	2,326,468
공원묘지	629,950	125,990	125,990	125,990	125,990	125,990
자연장지	479,500	95,900	95,900	95,900	95,900	95,900
화장시설	8,526,250	1,451,698	1,768,638	1,768,638	1,768,638	1,768,638
봉안당	1,679,700	335,940	335,940	335,940	335,940	335,94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6,908,771	1,250,314	1,312,829	1,378,471	1,447,394	1,519,763
국 비	966,987	175,000	183,750	192,938	202,585	212,714
도 비	414,423	75,000	78,750	82,688	86,822	91,163
시 비	5,527,361	1,000,314	1,050,329	1,102,845	1,157,987	1,215,886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대상사업 : 순천시 공설장사시설(공원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봉안당)

○ 사업기간 : 년중

○ 산출액(2023년) : 세출 1,250,314천원 / 세입 2,009,528천원

○ 산출근거(2023년)

★세출	화장로 필터교체사업	500,000천원
	인건비	39,812천원
	일반운영비	500,812천원
	공원묘지 잔디구입비 등	9,690천원
	시설유지비	200,000천원
★세입	공원묘지 사용료(관내)	1,030,000원×44건 = 45,320천원
	공원묘지 사용료(관외)	1,600,000원× 6건 = 9,600천원
	공원묘지 사용료(수급자, 유공자)	515,000원×4건 = 2,060천원
	공원묘지 사용료(연장)	515,000원×134건 = 69,010천원
	자연장지 사용료(관내)	400,000원×161건 = 64,400천원
	자연장지 사용료(관외)	700,000원×45건 = 31,500천원
	화장시설 사용료(15세이상 관내)	58,000원×1,760기 = 102,080천원
	화장시설 사용료(15세이상 관외)	700,000원×2,016기 = 1,411,200천원
	※ 23년 세입 405,000원×1,200기+700,000원×1,008기 = 1,191,600천원 (23년 7월 시행)	
	화장시설 사용료(15세이상 특례)	405,000원×384기 = 155,520천원
	※ 23년 세입 405,000원×0기+405,000원×192기 = 77,760천원 (23년 7월 시행)	
	화장시설 사용료(15세미만 관내)	45,000원×18기 = 810천원
	화장시설 사용료(15세미만 관외)	350,000원×2기 = 700천원
	화장시설 사용료(15세미만 특례)	202,000원×1기 = 202천원
	화장시설 사용료(관내 개장유골)	32,000원×518기 = 16,576천원
	화장시설 사용료(관외 개장유골)	350,000원×233기 = 81,550천원
	※ 23년 세입 202,000원×116기+350,000원×115기 = 63,682천원 (23년 7월 시행)	
	봉안당 사용료(관내)	180,000원×1,044기 = 187,920천원
	봉안당 사용료(관외)	600,000원×144기 = 86,400천원
	봉안당 연장(관내)	180,000원×199기 = 35,820천원
	봉안당 연장(관외)	600,000원×43기 = 25,80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시민복지국 사회복지과 과장 양영심(☎ 749-6180)  
장묘문화팀장 김범수(☎ 749-8635)

#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88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3. 3. 6.

## 1. 제정이유

-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 지원 근거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안 제3조~제5조) 시장의 책무, 공공보건의료 주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필수 인력지원 및 육성
  - 사업수행 기관에 대한 지원
  -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민관협력사업
- (안 제7조~제11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및 기술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공공보건의료협의회 구성 및 운영, 위원 임기 등

## 3. 제정안 : 별첨

## 4. 관련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2. 9. ~ 2023. 3. 1.) 결과 : 의견 있음
  - (의견제출자) 순천시 약사회
  - (제출의견) 제5조(사업수행기관 지원)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만 지원하도록 규정,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인 의료기관이 야간 운영할 경우 원외처방에 따른 약국 연장운영이 수반되므로 사업 지원 대상에 약국 포함 요청
  - (소관부서 검토결과) 수용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2. 7.(가족복지과-419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2. 3.(기획예산실-152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2. 9.(순천시 공고 제2023-352)

#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및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순천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주요사업)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운영
2. 보건의료 공급이 취약한 분야의 야간·응급진료 지정·운영
3. 공공보건의료 필수 인력지원 및 육성
4.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민관협력 사업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 약국(이하 “약국”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 향상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 소방서, 대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약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공공보건의료협의회)**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순천시 공공의료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건강 관련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원활한 연계 협력을 위한 기관·단체별 중점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역 공공의료 연대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에는 민·관 공동위원장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학계의 보건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순천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 전문가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자료의 제공 요청)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약국, 공공단체 등에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조사·검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약국에 대하여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회계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의료지도원증 및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99조에 따른 약사감시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5조(포상)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보건의료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医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870호
----------	--------

발의연월일 : 2023. 2. 21.

최미희 의원, 이영란 의원,  
김태훈 의원, 이복남 의원,  
최병배 의원, 신정란 의원,  
발의자 : 이세은 의원, 김영진 의원,  
최현아 의원, 오행숙 의원,  
박계수 의원, 서선란 의원,  
김미연 의원, 나안수 의원

## 1. 개정이유

- 학교 교과과정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순천만잡월드 활성화를 위해 휴관일을 변경하고자 함.
- 순천만잡월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근거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순천만잡월드 휴관일 변경(안 제4조)

조례 준용 규정 추가(안 제18조)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붙임 1】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로 한다)” 을 “매주 일요일” 로 한다.

제10조제1항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8조제2항 “순천만잡월드의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를

“순천만잡월드의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개관 및 휴관)</p> <p>① ~ ③(생략)</p> <p>④ 순천만잡월드(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로 한다)</u></p> <p>2. ~ 3(생략)</p> <p>⑤(생략)</p> <p>제10조(위탁운영) ① -----  <u>「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u> -----                      -----.</p> <p>② ~ ③(생략)</p> <p>제18조(준용규정)</p> <p>①(생략)</p> <p>② 순천만잡월드(의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p>	<p>제4조(개관 및 휴관)</p> <p>① ~ ③(현행과 같음)</p> <p>④ 순천만잡월드(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매주 일요일</u></p> <p>2. ~ 3.(현행과 같음)</p> <p>⑤(현행과 같음)</p> <p>제10조(위탁운영) ① -----  <u>「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u> -----                      -----.</p> <p>② ~ ③(생략)</p> <p>제18조(준용규정)</p> <p>①(현행과 같음)</p> <p>② 순천만잡월드(의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u>「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u>를 준용한다.</p>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 30.]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148호, 2020. 6. 30., 제정]

전라남도 순천시(신성장산업과), 061-749-4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진로 결정 능력 배양과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한 순천만잡월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순천만잡월드는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여순로 1783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어린이체험관, 청소년체험관과 카페테리아 등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순천만잡월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휴관일”이란 순천만잡월드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쉬는 날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순천만잡월드는 제4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순천만잡월드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③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개관시간을 변경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④ 순천만잡월드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로 한다)
2.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3.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하거나 제4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순천만잡월드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

여야 하며, 시장은 이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요율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하며,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이용료를 적용한다.

제7조(이용료 반환) 이용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체험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전액을 환불하고 체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험이 시작된 이후에도 환불할 수 있으며, 환불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체험시설물의 자체결함 등으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이용 제한) ① 시장은 시설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
2. 타인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음주, 흡연, 폭력 등 체험관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4. 임신부, 노약자 등 순천만잡월드 이용에 안전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5. 공공질서유지 저해 및 시설물 관리와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6. 그 밖의 공익목적 수행 상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물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공지하며,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이용 제한, 제12조제1항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순천만잡월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순천만잡월드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직원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시장은 시설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손상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순천만잡월드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모든 시설을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한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 의무를 위반할 때
2. 외부 평가를 거쳐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 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15조(운영세칙) 수탁자는 순천만잡월드 운영에 관하여 세부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순천만잡월드 운영 전반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예산 포함)을 해당연도 8월말까지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운영 관리실적(예산포함)을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상해 및 화재보험 등을 수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① 이용료의 징수에 대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  
방세기본법」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순천만잡월드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재무회계 규  
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48호, 2020.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장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873호
----------	--------

발의연월일 : 2023. 2. 23.

장경원 의원, 유승현 의원,

나안수 의원, 오행숙 의원,

정병희 의원, 정홍준 의원,

발 의 자 :

양동진 의원, 우성원 의원,

최병배 의원, 이세은 의원,

신정란 의원, 이영란 의원

## 1. 제정이유

- 화석연료 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예산의 비중을 높여 탄소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탄소인지예산제의 운영 지침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탄소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바. 시민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3. 제정안: 붙임 1

## 4. 관련법령

○ 「국가재정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5. 예산상황: 붙임 2(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석연료 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예산의 비중을 높이는 등 순천시의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 등에서 탄소 감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인지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탄소인지예산서”란 예산이 탄소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탄소인지결산서”란 예산이 탄소 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탄소감축영향평가”란 재정사업이 탄소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등에 활용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 감축 목표 및 지표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탄소감축영향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지침 작성) ① 시장은 탄소 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탄소인지예산서와 탄소인지결산서(이하 “탄소인지 예산서·결산서”라 한다) 작성·활용, 실무 지식 함양 등 탄소인지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탄소인지예산서 작성 등)** ①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탄소인지 예산서·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탄소인지예산서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시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탄소배출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탄소 감축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③ 탄소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어야 한다.

④ 탄소인지예산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탄소 감축 예산이 증가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6조(탄소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탄소인지 예산서·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경제와 환경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 탄소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시장은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탄소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운영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탄소인지예산서의 탄소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과 권고
3. 탄소인지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탄소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순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순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교육과정 운영)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과 소속 공무원의 탄소 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민 참여와 지원) ① 순천시민은 탄소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순천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조 례 명: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탄소인지예산제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예산서, 결산서 유인물 제작비 등의 소요가 예상된다.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시책 수립 후 사업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5. 작성자: 순천시의회의원 장경원

---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2.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4.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5.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

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 등을 개편하여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8.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참고 2

##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례명	공포일	부서
1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2021. 12. 27.	경제복지국 기후환경과
2	광양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2022. 11. 16.	
3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2021. 4. 9.	에너지산업과
4	시흥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2022. 2. 3.	

#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미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874호
----------	--------

발의연월일 : 2023. 2. 24.

발 의 자 : 김미연 의원, 이영란 의원

## 1.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적용범위를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활성화계획 수립(안 제4조)
- 재정 및 운행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안 제6조)
-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안 제7조)
- 홍보 및 교육(안 제8조)

## 3. 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예산상황 :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充電)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자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재정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시청사 및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대상 기업에 대하여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 제공에 따른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화재위험 등의 예방을 위해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조 례 명 :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본 조례는 조례안 제5조 ~ 제7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등 비용 발생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전·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비용 발생은 제5조(재정에 대한 지원) 및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어 그 비용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5. 작성자 : 순천시의원 김 미 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과) 044-203-43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12. 31., 2019. 4. 2., 2021. 7. 27.>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16. 12. 2.>

8. 삭제 <2016. 12. 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저장·운송·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제작·조립하는 기업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하거나 설치·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

[전문개정 2011. 5. 24.]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공급·판매 또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생산을 위한 연구·조사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③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본조신설 2016. 1. 27.]

[제목개정 2021. 7. 27.]

제1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61호, 2022. 1. 25., 일부개정]

제18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 25.>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판매시설
  - 마. 운수시설
  - 바. 의료시설
  - 사. 교육연구시설
  - 아. 운동시설
  - 자. 업무시설
  - 차. 숙박시설
  -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본조신설 2016. 6. 30.]

[제목개정 2022. 1. 25.]

[제1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5는 제18조의7로 이동 <2022. 1. 25.>]

#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세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875호
----------	--------

발의연월일 : 2023. 2. 24.

이세은 의원, 신정란 의원,

발 의 자 : 장경원 의원, 최병배 의원,

김영진 의원, 최미희 의원

## 1. 개정이유

-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된 청년 연령을 확대하여 각종 청년 정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청년 연령 확대(안 제2조제1호)

-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 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 로 확대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청년기본법」

##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붙임 1】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p> <p>1. <u>“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u></p> <p>2. ~ 5. (생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p> <p>1. <u>“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u></p> <p>2. ~ 5. (현행과 같음)</p>

## 청년기본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33호, 2021. 8. 17., 일부개정]

국무조정실(청년정책총괄과) 044-200-6326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의 날)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한다.

##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청년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국무총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분석·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청년정책 연구사업) ① 국무총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1. 12.>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 “공직후보자등”은 “청년인재”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제16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

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27조(국회 보고) ① 정부는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청년정책의 수립·추진실적 및 청년 실태조사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4조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2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

부칙 <제18433호, 2021. 8.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순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홍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876호
----------	--------

발의연월일 : 2023. 2. 24.

정홍준 의원, 최미희 의원,  
장경순 의원, 장경원 의원,  
발의자 : 강형구 의원, 최병배 의원,  
정광현 의원, 이세은 의원,  
김태훈 의원

## 1. 제정이유

-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여건 조성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안 제4조)
- 대안교육기관 지원(안 제5조)
- 대안교육기관 지원 업무의 위탁(안 제6조)

## 3. 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

## 순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 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이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나 순천시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지원)**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2.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 순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및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지원)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5. 작성자 : 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

---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교육목표
5. 학칙
6.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8. 교직원 배치계획서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참고 2****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례명	공포일	부서
1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 1. 3.	
2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 7. 7.	민주시민교육과
3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 12. 29.	교육가족과
4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1. 12. 29.	민주시민교육과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 4. 15.	
6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 4. 13.	생활체육건강과
7	여수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 12. 30.	교육지원과
8	영덕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0. 10. 23.	정책기획담당관
9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 10. 12.	
10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 12. 22.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참고 3****대안교육기관 현황(전라남도)**

〈2022.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2022. 전라남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연번	시군	기관명	대표자	비고
1	여수	뉴젠리더십학교	정재천	
2	순천	사랑어린이학교	이금순	
3	순천	순천어깨동무학교	박용철	
4	순천	더힘스쿨	박승찬	
5	담양	잇다자유발도르프학교	한경아	
6	화순	지오초등학교	장지영	
7	화순	지오학교	서광렬	

#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388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3. 3. 6.

## 1. 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1. 5. 18.)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제정 필요

##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안 제1조)
- 조례 정의(안 제2조)
- 조례 적용범위(안 제3조)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 사업주의 협조(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지원(안 제8조, 안 제9조)
-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및 우수기업 인증(안 제10조, 안 제11조)
-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안 제12조)

## 3. 제정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 31. ~ 2.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2. 1.(가족복지과-348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1. 27.(기획예산실-119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1. 31.(순천시 공고 제2023-231호)

#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순천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여 순천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5.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 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과 노동 조건 개선
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업종별·성별 실태자료 수집과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홍보
5.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성별, 연령, 인종, 장애 등 근로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과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과 홍보
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산업재해예방대책의 수립과 평가
2.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
3.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운영
4.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 노동권익보호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88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3. 3. 6.

## 1. 개정이유

- 코로나 이후 심신회복과 치유를 위한 건강한 삶에 대한 인식 고조 등으로 발달한 웰니스 산업을 관광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 근거 마련
- 여행트렌드가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현재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로 한정된 지원 조항 정비하여 관광객 유치 및 경제 활성화 도모

## 2. 주요내용

- “웰니스 관광”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 웰니스 관광 : 웰빙(Well-being), 건강(Fitness),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
- 지원 대상 확대 및 보상금 지원기준 정비(안 제14조)
  -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삭제 → 지원 대상 확대(사업을 수행하는 자)
  - 보상금 지급기준 등 삭제 → 시장이 따로 정함
- 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신설(안 제16조의2)
- 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안 제20조의5)

## 3. 개정안 : 별첨

## 4.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 31. ~ 2.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2. 7.(가족복지과-419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1. 31.(기획예산실-131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1. 31.(순천시 공고 제2023-246호)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 건강(Fitness),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을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여행업자가 지역명소”를 “지역명소”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그 밖에 행·재정적”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자원(관광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전문 인력·해설사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3.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5.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 및 제16조” 를 “제14조부터 제16조의2까지” 로 한다.

제20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웰니스 관광사업에 필요한 경비

별표 1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0. (생략)</p> <p>&lt;신설&gt;</p>	<p>제2조(정의)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u>“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 건강(Fitness),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u></p>
<p>제14조(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p> <p>① 시장은 <u>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1. · 2. (생략)</p> <p>3. <u>여행업자가 지역명소나 관광지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u></p> <p>&lt;신설&gt;</p>	<p>제14조(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p> <p>① ---- <u>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u> ----- ----- <u>경우</u>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지역명소</u>----- -----</p> <p>4. <u>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② (생략)</p> <p>③ <u>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지원단가, 지급대상은 별표 1과 같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현행	개정안
<p>④ 그 밖에 행·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lt;신설&gt;</p> <p>제17조(자료제공) 제14조 및 제1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적극 협조한다.</p> <p>1. 2. (생략)</p> <p>제20조(보조금)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lt;신설&gt;</p>	<p>③ 제1항에 따른 ----- ----- -----.</p> <p>제16조의2(웰니스 관광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자원(관광콘텐츠) 개발</p> <p>2. 웰니스 관광 전문 인력·해설사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p> <p>3.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p> <p>4.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p> <p>5.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p> <p>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7조(자료제공) 제14조부터 제16조의2까지----- -----.</p> <p>1. 2. (현행과 같음)</p> <p>제20조(보조금)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웰니스 관광사업에 필요한 경비</p>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개정 2020.06.01., 2021.03.31.>

<삭 제>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단가, 지급대상(제14조제3항 관련)**

분야	구분	지급 기준 (1회 방문)	지급단가		지급 대상
			성수기 (3-6월, 9-11월)	비수기 (7-8월, 12-2월)	
숙박	내·외국인	내국인 10명 이상	1박 10,000원	1박 12,000원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여행사)
		외국인 3명 이상	2박 이상 15,000원	2박 이상 20,000원	
수학여행 및 학생단체	10명 이상		1박 6,000원	2박 이상 10,000원	
체험	농촌 체험	내국인 10명 이상	1인당 체험경비의 50% 범위내 최대 5,000원		
		외국인 3명 이상	※ 분야별 인센티브 중복 가능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의안명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의2)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작성자

○ 문화관광국 관광과 과장 이찬성(☎ 749-5500)  
관광기획팀장 전선희(☎ 749-5788)

---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88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3. 3. 6.

## 1. 개정이유

-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인가)에서 대안교육기관까지 확대하여 폭넓은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안 제4조제2항)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지원대상 범위 확대

## 3. 개정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초·중등교육법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참고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2. 9. ~ 3. 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2. 15.(가족복지과-517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3. 2. 7.(평생교육과-2318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2. 8.(기획예산실-182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2. 9.(순천시 공고 제2023-338호)

#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대상)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4조(지원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u></p>

#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4조제2항)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2. 비용추계의 전제

- 대안교육기관(협동조합더힘스쿨·사랑어린이학교·어깨동무학교·하늘샘국제기독교학교·새로이미니스트), 특수학교(선혜학교) 입학생 수를 전제로 추계
- 순천교육지원청 「2022~2026학년도 학생배치계획 자료」 초등학교 입학생 수를 전제로 추계

## 3.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총 비용(a-b)	-896	-242	-231	-214	-209
세입(a)	0	0	0	0	0
세출(b)	896	242	231	214	209

- 비용추계(당초-변경) 대조표

(단위 : 명, 백만원)

당초	구분 \ 연도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소 계	8,784	880	2,380	238	2,267	227	2,096	210	2,041	205
	초등학교(1학년)	8,704	872	2,360	236	2,247	225	2,076	208	2,021	203
	특수학교(1학년)	80	8	20	2	20	2	20	2	20	2
변경	구분 \ 연도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소 계	8,904	892	2,420	242	2,307	231	2,136	214	2,081	209
	초등학교(1학년)	8,704	872	2,360	236	2,247	225	2,076	208	2,021	203
	특수학교(1학년)	80	8	20	2	20	2	20	2	20	2
대안교육기관(1학년)	120	12	40	4	40	4	40	4	40	4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합 계	896	242	231	214	209
시 비	896	242	231	214	209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2023년) 2,420명 × 100,000원 = 242,000천원
- (2024년) 2,307명 × 100,000원 = 230,700천원
- (2025년) 2,136명 × 100,000원 = 213,600천원
- (2026년) 2,081명 × 100,000원 = 208,10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 8. 작성자

- 문화관광국 평생교육과 과장 신은숙(☎ 749-6753)
- 교육지원팀장 남현순(☎ 749-6761)

## 참고

## 관련 법령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명목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방법·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행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868호
----------	--------

발의연월일 : 2023. 2. 16.

오행숙 의원, 유승현 의원,  
장경순 의원, 최현아 의원,  
김미연 의원, 김태훈 의원,  
발의자 : 우성원 의원, 이향기 의원,  
이복남 의원, 신정란 의원,  
양동진 의원, 강형구 의원,  
서선란 의원

## 1. 개정이유

- 소형경전철 운영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 등 일부 사항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 소형경전철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가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시장을 소형경전철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
- 소형경전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간사로 지정
- 소형경전철 이용 목적지(순천만) 안내 및 관람객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문학기역은 순천만역으로 명칭 변경함에 따라 갈대열차 운행구간 명칭 정비

## 2. 주요내용

- (안 제2조) 조례 정의 중 “이용하는” 을 “사용하는” 으로 수정
- (안 제2조제6호) 갈대열차 운행구간 중 “문학기역” 을 “순천만역” 으로 정비
- (안 제12조제3항) 당연직 위원 중 “부시장, 국가정원 운영업무 담당 국

소장 및 과장” :을 “국가정원 운영업무 담당 국·소장” 으로 정비

○ (안 제12조제7항)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관련 조항 신설

○ (안 별표 1) 이용료 중 순천시민 어린이 단일권 왕복요금 “6,000원” 을  
“5,000원” 으로 정정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붙임 1】

##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하는”을 “사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문학관역”을 “순천만역”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시장, 국가정원”을 “국가정원”으로, “국·소장 및 과장”을 “국·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소형경전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제12조”를 “제14조”로 한다.

별표 1의 순천시민의 어린이의 단일권(소형경전철+갈대열차)의 왕복란 중 “6,000”을 “5,00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이용하는</u>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 략)</p> <p>6. “갈대열차”란 <u>문학관역</u>과 순천만습지 구간을 운행하는 전기차, 유기기구 등 친환경 이동수단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u>사용하는</u>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u>순천만역</u>----- ----- -----.</p>
<p>제5조(임시휴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형경전철 운영을 임시휴무한다.</p> <p>1. · 2. (생 략)</p> <p>3. <u>기타</u> 궤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p>	<p>제5조(임시휴무)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에</u> ----- ----- -----</p>
<p>제8조(이용료의 반환)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반환한다.</p> <p>1. (생 략)</p> <p>2. 소형경전철 운영에 필요한 <u>기타</u>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 또는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p> <p>3. 천재 · 지변 <u>기타</u> 불가피한 사유로 소형경전철을 이용할 수 없어 운영을 중단한 경우</p>	<p>제8조(이용료의 반환)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그 밖</u> <u>의</u> ----- -----</p> <p>3. ----- <u>그 밖에</u> ----- ----- -----</p>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 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국가정원 운영업무 담당 국·소장 및 과장, 교통업무 담당 과장, 순천만습지 운영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 4. (생략)

④ ~ ⑥ (생략)

<신설>

제15조(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 하였을 때

2. ~ 4. (생략)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국가정원 -----  
----- 국·소장-----  
-----  
-----  
-----  
-----.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형경전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5조(위탁 취소) -----  
-----  
-----.

1. ----- 제14조-----  
-----

2. ~ 4. (현행과 같음)

## 현 행

[별표 1] <개정 2021. 8. 5.>

### 이 용 료(조례 제7조 관련)

구 분		단일권 (소형경전철+갈대열차)		통합권 (국가정원+순천습지+ 소형경전철+갈대열차)	비고
		왕복	편도		
일반권	성인	8,000	6,000	14,000	
	청소년, 군인	8,000	6,000	12,000	
	어린이	6,000	5,000	8,000	
	유아	6,000	5,000	5,000	
순천시민	성인	6,000	5,000	6,000	
	청소년, 군인	6,000	5,000	5,500	
	어린이	<b>6,000</b>	4,000	4,000	
단체 (20인 이상)	성인	7,000	5,500	11,000	
	청소년, 군인	5,000	3,500	8,000	
	어린이	4,000	3,000	6,000	
	유아	4,000	3,000	3,000	
	순천지역 중/고등학교	4,000	3,000	4,500	
	순천지역 초등학교	4,000	3,000	3,000	
1년권 · 순천시민 1년 회원권 · 관광지 통합입장권 소지자 관람료 면제자		· 단일권 왕복 탑승 요금에서 2,000원 할인된 금액 (단, 국가정원 등·서문·메표소, 순천만습지 입구 메표소 발권 시에만 할인 적용)			

<이하 생략>

## 개 정 안

[별표 1] <개정 2021. 8. 5.>

### 이 용 료(조례 제7조 관련)

구 분		단일권 (소형경전철+갈대열차)		통합권 (국가정원+순천습지+ 소형경전철+갈대열차)	비고
		왕복	편도		
일반권	성인	8,000	6,000	14,000	
	청소년, 군인	8,000	6,000	12,000	
	어린이	6,000	5,000	8,000	
	유아	6,000	5,000	5,000	
순천시민	성인	6,000	5,000	6,000	
	청소년, 군인	6,000	5,000	5,500	
	어린이	<b>5,000</b>	4,000	4,000	
단체 (20인 이상)	성인	7,000	5,500	11,000	
	청소년, 군인	5,000	3,500	8,000	
	어린이	4,000	3,000	6,000	
	유아	4,000	3,000	3,000	
	순천지역 중/고등학교	4,000	3,000	4,500	
	순천지역 초등학교	4,000	3,000	3,000	
1년권 · 순천시민 1년 회원권 · 관광지 통합입장권 소지자 관람료 면제자		· 단일권 왕복 탑승 요금에서 2,000원 할인된 금액 (단, 국가정원 등·서문·메표소, 순천만습지 입구 메표소 발권 시에만 할인 적용)			

<이하 현행과 같음>

【붙임 2】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조 례 명 :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 어려움.
5. 작성자: 순천시의회 의원 오행숙

---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정 ) 2020.12.31 조례 제2224호

( 일부개정 ) 2021.08.05 조례 제232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소형경전철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천소형경전철”이란(이하 “소형경전철”이라 한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순천만습지 사이에 설치된 궤도시설물, 궤도차량,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궤도 운송체계를 말한다.
2. “이용료”란 소형경전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소형경전철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4. “수탁자”란 소형경전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휴무일”이란 소형경전철을 운영하지 않고 쉬는 날을 말한다.
6. “**갈대열차**”란 **문학관역과** 순천만습지 구간을 운행하는 전기차, 유기기구 등 친환경 이동수단을 말한다. <신설 2021. 8. 5.>

제3조(운행시간) ① 소형경전철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10:00 ~ 18:00
2. 주말 및 공휴일 09:00 ~ 18:00

②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형경전철 유지 관리와 순천만국가

정원 운영시간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정기휴무) 소형경전철의 정기휴무일은 월요일로 한다. 단, 휴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을 정기휴무일로 한다.

제5조(임시휴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형경전철 운영을 임시휴무한다.

1.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가 필요할 때
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궤도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3. 기타 궤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발권방법) 발권은 편도권, 왕복권, 통합권으로 하며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및 소형경전철 정거장에서 발권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인 발권 및 인터넷 예약 발권을 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① 소형경전철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면제·감경대상에 해당될 경우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8. 5.>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소형경전철 등 관련 행사 시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8. 5.>

제8조(이용료의 반환)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반환한다.

1. 소형경전철 운행 중 차체결함 등으로 더이상 운행할 수 없을 경우
2. 소형경전철 운행에 필요한 기타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 또는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소형경전철을 이용할 수 없어 운영을 중단한 경우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시설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형경전철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7세 미만의 어린이
3. 인화물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1. 8. 5.>
4. 궤도시설 운영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10조(손해배상) ① 관리자 또는 수탁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궤도 시설의 손해에 대하여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 또는 수탁자의 손해배상 등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갈대열차) ① 갈대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소형경전철 탑승권 소지자는 제1항의 이용료를 지불한 것으로 본다.

③ 갈대열차의 운행시간, 정기휴무, 임시휴무, 이용료의 반환, 이용제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8. 5.]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소형경전철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소형경전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소형경전철 운영형태에 관한 사항

2. 소형경전철 운영활성화, 노선 등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국가정원 운영업무 담당 국·소장 및 과장**, 교통업무 담당 과장, 순천만습지 운영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명

2. 철도·궤도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4. 법률, 경영, 회계, 노무, 기술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 8. 5.]

제13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 8. 5.]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소형경전철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4.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탁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 8. 5.]

제15조(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제13조에서 이동 2021. 8. 5.]

제16조(조직) 소형경전철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책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 8. 5.]

제1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소형경전철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 8. 5.]

제18조(이용료의 사용) 이용료는 시설 유지보수, 환경정비, 관광객 확충 및 경영활성화 사업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 8. 5.]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5.>

[제17조에서 이동 2021. 8. 5.]

부칙 <조례 제2224호, 2020. 12. 31.>

이 조례는 시장이 소형경전철 관리자로 운영을 개시한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0호, 2021.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1. 8. 5.>

이 용 료(조례 제7조 관련)

구 분		단일권 (소형경전철+갈대열차)		통합권 (국가정원+순천만습지+ 소형경전철+갈대열차)	비고
		왕복	편도		
일반권	성인	8,000	6,000	14,000	
	청소년, 군인	8,000	6,000	12,000	
	어린이	6,000	5,000	8,000	
	유아	6,000	5,000	5,000	
순천시민	성인	6,000	5,000	6,000	
	청소년, 군인	6,000	5,000	5,500	
	어린이	6,000	4,000	4,000	
단체 (20인 이상)	성인	7,000	5,500	11,000	
	청소년, 군인	5,000	3,500	8,000	
	어린이	4,000	3,000	6,000	
	유아	4,000	3,000	3,000	
	순천지역 중/고등학교	4,000	3,000	4,500	
	순천지역 초등학교	4,000	3,000	3,000	
1년권 · 순천시민 1년 회원권 · 관광지 통합입장권 소지자/ 관람료 면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일권 왕복 탑승 요금에서 2,000원 할인된 금액 (단, 국가정원 동서문매표소, 순천만습지 입구 매표소 발 권 시에만 할인 적용)</li> </ul>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등 기타 중복 할인 불가

< 면제 대상 >

1. 국민 ·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 또는 소형경전철 관련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순천시민인 유아. 단, 유아 2명 당 보호자 1명 동반 시 탑승 가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비 고 >

1. “유아”란 만 3세 이상 ~ 만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란 초등학생 및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말한다.
7. “1년권”이란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조례」 제4조 및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조례」 제5조에 따른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8.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이란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른 순천시민이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9. “관광지 통합입장권”이란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순천 자연휴양림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10. “관람료 면제자”란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조례」 제5조 및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조례」 제5조에 따른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의 관람료를 면제받아 무료로 입장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최병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877호
----------	--------

발의연월일 : 2023. 2. 27.

최병배 의원, 양동진 의원,

장경원 의원, 유승현 의원,

발의자 : 신정란 의원, 이세은 의원,

정홍준 의원, 이영란 의원,

강형구 의원, 장경순 의원

## 1. 제정이유

- 순천시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안 제4조)
- 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물 절약 시책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3. 제정안: 별첨

## 4. 관련법령

- 「수도법」 제15조
-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

5. 예산상황: 해당 없음

## 【붙임 1】

#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의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가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대상) 「수도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순천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등이 미설치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 시책 시행)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조 례 명: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안 제5조(예산지원)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수도법」에 따라 건축물의 신규 및 증·개축시에 절수설비 설치의 의무사항이며, 수도설비는 개인의 설치대상으로 비용추계를 생략함
- 향후 기후 변화 등에 따른 필요사항 발생 시 재정지원 검토

5. 작성자: 순천시의회의원 최병배

---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수도법

-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수도법 시행규칙

-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0호 및 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1. 법 제3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절수설비: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나. 절수기기: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2.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해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가 설치해야 하는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다.

### 가. 수도꼭지

- 1)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 2) 샤워용은 공급수압 98kPa에서 해당 수도꼭지에 샤워호스(hose)를 부착한 상태로 측정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 나. 변기

- 1)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 2)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평균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 4) 대변기는 물탱크의 내부 벽면 또는 세척밸브의 수량조절용 나사 부분에 사용수량을 표시한 것
- 5) 대변기의 사용수량을 조절하는 부속품은 사용수량이 6리터를 초과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한 것. 다만, 변기 막힘 현상이 지속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 비고

1. "공급수압"이란 절수설비 직전의 위치에서 물이 공급될 때의 수압을 말하며, 최대 공급수압이 98kPa 미만인 지점에 설치되는 절수설비는 공급수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토수량"이란 일정 시간 동안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물의 총량[L]을 말한다.
3. "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L/min]을 말한다. 다만, 토수가 시작된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토수유량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토수가 시작되어 토수가 그칠 때까지의 토수량을 토수유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4. "최대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의 핸들이나 레버를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L/min]을 말한다. 다만,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 쪽 또는 냉수

쪽 어느 한 쪽을 완전히 열었을 때의 토수유량 중 큰 값을 최대 토수유량으로 본다.

5. "세척밸브"란 물탱크가 없는 양변기에 설치하는 수세밸브를 말한다.
6. "사용수량"이란 수도관으로부터 물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세헨들을 1초 간 작동시켜 변기를 세척할 때 가장 많은 양의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설치되어 나오는 1회분 물의 양을 말하며, 변기 세척 후 물 탱크 외의 부분을 다시 채우는 보충수를 포함한다. 다만, 물탱크 대신 세척밸브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변기의 1회분 물의 양은 수세헨들을 1초 간 작동시켰을 때의 물의 양과 3초 간 작동시켰을 때의 물의 양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7. "평균사용수량"이란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에 적용하는 사용수량을 말하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평균사용수량} = \frac{(\text{소변용 사용수량}) \times 2 + (\text{대변용 사용수량})}{3}$$

**참고 2****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2019. 1. 4.	
2	경기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2020. 7. 15.	상하수과
3	경상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2017. 8. 3.	
4	고양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2020. 1. 7.	
5	구리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2022. 4. 8.	
6	군산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2020. 8. 4.	수도과
7	김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2021. 4. 14.	상하수도과
8	김해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2019. 6. 28.	수도과
9	남동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2021. 3. 12.	환경보전과
10	남양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2020. 5. 14.	수도과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2021. 9. 23.	녹색환경과
12	목포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2020. 12. 21.	수도과
13	부산광역시 기장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	2021. 1. 1.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9. 24.	환경보호담당
15	부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2020. 12. 21.	수도시설과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0. 19.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28.	
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2020. 5. 14.	행정지원과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7. 9.	맑은환경과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 6.	
21	성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2019. 9. 16.	물공급과
22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2017. 9. 29.	상하수도과
23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2020. 12. 15.	상수도과
24	안성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2017. 4. 14.	상수도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25	안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2020. 10. 15.	수도시설과
26	양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2022. 10. 24.	
27	의정부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에 관한 조례	2022. 5. 10.	
28	익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	2020. 11. 13.	상수도과
29	인천광역시 계양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2021. 4. 9.	환경과
30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2022. 10. 6.	
31	인천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2020. 11. 9.	
32	인천광역시 중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2020. 12. 23.	환경보호과
33	전라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2020. 8. 6.	물환경과
34	전라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2020. 5. 29.	
35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2022. 10. 14.	
36	정읍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2020. 12. 23.	상하수도사업소
37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2017. 12. 29.	
38	천안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2017. 1. 2.	급수과
39	청주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2021. 9. 17.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40	충주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2017. 6. 2.	상수도과
41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	2017. 9. 20.	물관리정책과
42	통영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5. 17.	
43	평택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2018. 4. 26.	수도과
44	하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2021. 4. 5.	상수도과
45	홍성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	2018. 3. 15.	상수도관리

#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878호
----------	--------

발의연월일 : 2023. 3. 3.

우성원 의원, 이복남 의원,

이세은 의원, 이향기 의원,

발의자 : 강형구 의원, 오행숙 의원,

최병배 의원, 양동진 의원,

서선란 의원

## 1. 개정이유

- 신규 생태체험선 운영으로 탐방객들에게 순천만 갯벌 및 습지의 다양한 생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신규 생태체험선 이용요금 도입

## 2. 주요내용

- (안 별표 5) 순천만역선착장에서 대대선착장 구간 신규 생태체험선 운영에 따라 이용요금을 신설한다.

## 3. 개정조례안 : 붙임 1

##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붙임 1】

##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이 용 료(제27조 관련)**

구 분			이용료	비고		
순 천 만 생태체험선	대형	성 인	만 19세 이상	7,000원	왕복	· 대대선착장 ↔ 여자만해역
		청소년	만 13세 ~ 만 18세	3,000원		
		어린이	만 3세 ~ 만 12세	2,000원		
	소형	성 인	만 19세 이상	3,000원	편도	· 순천만역선착장 → 대대선착장 · 대대선착장 → 순천만역선착장
		청소년	만 13세 ~ 만 18세	2,000원		
		어린이	만 3세 ~ 만 12세	1,000원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5]</p> <p style="text-align: center;"><b>이 용 료(제27조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이용료</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순 천 만 생태체험선</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 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 19세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 13세 ~ 만 18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어린이</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 3세 ~ 만 12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이용료	비고	순 천 만 생태체험선	성 인	만 19세 이상	7,000원	청소년	만 13세 ~ 만 18세	3,000원	어린이	만 3세 ~ 만 12세	2,000원	<p>[별표 5]</p> <p style="text-align: center;"><b>이 용 료(제27조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이용료</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순 천 만 생태체험선</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 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 19세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0원</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소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 13세 ~ 만 18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어린이</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 3세 ~ 만 12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원</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순 천 만 생태체험선</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 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 19세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원</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소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 13세 ~ 만 18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어린이</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 3세 ~ 만 12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이용료	비고		순 천 만 생태체험선	대형	성 인	만 19세 이상	7,000원	소형	청소년	만 13세 ~ 만 18세	3,000원	어린이	만 3세 ~ 만 12세	2,000원	순 천 만 생태체험선	대형	성 인	만 19세 이상	3,000원	소형	청소년	만 13세 ~ 만 18세	2,000원	어린이	만 3세 ~ 만 12세	1,000원
구 분		이용료	비고																																									
순 천 만 생태체험선	성 인	만 19세 이상	7,000원																																									
	청소년	만 13세 ~ 만 18세	3,000원																																									
	어린이	만 3세 ~ 만 12세	2,000원																																									
구 분		이용료	비고																																									
순 천 만 생태체험선	대형	성 인	만 19세 이상	7,000원																																								
	소형	청소년	만 13세 ~ 만 18세	3,000원																																								
		어린이	만 3세 ~ 만 12세	2,000원																																								
순 천 만 생태체험선	대형	성 인	만 19세 이상	3,000원																																								
	소형	청소년	만 13세 ~ 만 18세	2,000원																																								
		어린이	만 3세 ~ 만 12세	1,000원																																								

【붙임 2】

##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조 례 명 :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이용료

- 비용발생 요인 : 순천만생태체험선 신규 항로 취항 및 유지비 반영
- 관련 조문 : 별표5 이용료(제27조 순천만생태체험선)

구 분		이용료	비고	
순 천 만 생태체험선	성 인	만 19세 이상	7,000원	왕복 · 대대선착장 ↔ 여자만해역
	청소년	만 13세 ~ 만 18세	3,000원	
	어린이	만 3세 ~ 만 12세	2,000원	
	성 인	만 19세 이상	3,000원	편도 · 순천만역선착장 → 대대선착장 · 대대선착장 → 순천만역선착장
	청소년	만 13세 ~ 만 18세	2,000원	
	어린이	만 3세 ~ 만 12세	1,000원	

3. 비용추계의 전제

이용료

- 선박 1대 기준으로 세출과 세입내역을 산정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 이용자 수는 선박정원의 60%로 산정
- 신규 생태체험선의 운항일수 및 횟수는 휴무일과 평균 해수면 조차에 따라 산정
- 체험선 홍보 및 문학관 ~ 순천만 습지 도보이동 구간 이동 수단 마련으로 통합권 수입 매년 2% 증가 산정
- 연간투자비용은 직렬별 평균 인건비 3% 및 운항 거리에 따른 평균 유류비 4% 증가 산정

4. 비용추계의 결과

이 용 료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	212,377	42,095	42,315	42,506	42,666	42,795
세입	684,123	131,460	134,089	136,771	139,506	142,297
세출	471,746	89,365	91,774	94,265	96,840	99,502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471,746	89,365	91,774	94,265	96,840	99,502
시 비	471,746	89,365	91,774	94,265	96,840	99,502

6.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이 용 료(2023년)

(단위 : 천원)

구분	신규체험선			비고
세출 예산(안)	89,365			
구분	단 가	인원	유지비	
인건비(선장)	49,000	1명	49,000	
유류비	23,475	1식	23,475	
보험료	3,000	1식	3,000	
유지관리비	8,000	1식	8,000	
감가상각비	5,890	1식	5,890	
세입 예산(안)	131,460			
운항요금	3,000원			
운항일수 / 일 평균 운항	313일 / 20회			· 월요일 휴항 (52회/년)
평균 탑승인원	7명			

7. 협의사항 : 해당 없음

8. 부서의견 : 해당 없음

## 참고 1

## 기존 조례

###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 ( 제정) 2015.12.31 조례 제1625호  
(일부개정) 2016.12.15 조례 제1700호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1704호  
(일부개정) 2017.04.21 조례 제1730호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8.04.10 조례 제1897호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8.10.01 조례 제1921호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8.12.31 조례 제1970호  
(일부개정) 2019.07.01 조례 제2015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11.12 조례 제2072호  
(일부개정) 2020.11.18 조례 제2197호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2226호  
(일부개정) 2021.05.07 조례 제2271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순천만습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

16.12.30>

1. “시설”이란 순천만습지(이하 “습지시설”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습지시설”이란 순천만 중심시설지구(자연생태관, 자연의소리체험관 등), 용산전망대, 탐조대, 순천만쉼터, 순천만천문대, 공예·특산품관, 낭트 정원,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주차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순천만 생태체험선 등 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2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4 “관람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습지시설의 관람 등을 위해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주차료”라 함은 습지시설 내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료”란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이용료”란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업무) 습지시설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

30>

1. 습지내 시설물 및 전시품의 관리·운영
2. 생태자료 등 소장품의 보관·진열과 이에 따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습지시설 수입금 관리
4. 학습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천문대 주관측실 및 보조 관측실, 천체투영실, 전시실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천문관측을 통한 자연환경의 소중함 체득기회 제공
7. 우주천체에 관한 정보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8.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제2장 시설의 관람 및 운영

제4조(관람 및 대표시간) 습지시설의 관람 및 대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일몰 후 관람 가능한 습지시설물은 천문대로 한다.

구분	대표시간	관람시간
11월 ~ 2월	08:00 ~ 17:00	08:00 ~ 19:00
3월 ~ 4월, 9월 ~ 10월	08:00 ~ 18:00	08:00 ~ 20:00
5월 ~ 8월	08:00 ~ 19:00	08:00 ~ 20:00

제5조(관람료 등) ① 습지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시 관람료를 따로 정하여 관람권을 발급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18.12.31]

③ 관람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발매기로 판매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2018.12.31]

④ 자동발매기로 관람권을 판매할 경우에는 관람권의 규격과 도안 등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제5항에서 이동 2018.12.31]

⑤ 관람자는 관람권을 제시한 후 입장하여야 한다.[제6항에서 이동 2018.12.31]

⑥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유효기간내의 통합입장권을 제시한 경우 제1항의 관람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15.> [제7항에서 이동 2018.12.31]

⑦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른, 유효기간내의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을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관람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1.18>

제6조(관람료 면제)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신분증,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입장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료 경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경감한다.

1.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소지자. 이 경우 별표 1의 순천시민 관람료를 적용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입장제한) 시장은 시설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비상사태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 할 우려가 있는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5세 미만의 어린이

4.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자
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6. 음식물을 반입하는 자
7.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자(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조건은 예외로 한다)
8. 바퀴달린 신발을 포함하여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자. 단 유모차, 휠체어, 공무수행 및 습지 유지·관리를 위해 사전 협의 된 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05.07>
9. 그 밖에 시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및 전시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불 피우기, 취사, 야영, 쓰레기투기, 무허가 상행위
4.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를 관리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 <신설 2021.05.07>
6. 그 밖에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호에서 이동 2021.05.07>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책임) 관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훼손하였을 경

우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3장 시설의 사용 및 이용

제11조(사용범위) 습지시설은 생태환경관련 학술발표회, 강연회, 체험교실, 우주천문 관련 학술발표회 및 전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사용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07>

③ 사용자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사용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및 사용시간) ① 제1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습지시설의 운영요원으로부터 교육을 지도받고자 하는 자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수강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별표 3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한 시설사용
2.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세미나, 교육 또는 우주천체에 관한 정보 및 교육에 사용되는 시설 사용. 다만, 전시물 관람과 교육 등을 받고자 입장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직접적인 홍보에 해당하는 사용의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6. 시설의 노후 등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05.07

제16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변상) ① 사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9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2>

1. 시설의 고장 또는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3.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 2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4.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 1일 전에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90% <개정 2021.05.07>
5.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사용 개시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신설 2021.05.07>

#### 제4장 시설의 운영

제20조(순천만자연생태관) 순천만자연생태관의 운영시설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전시실 : 갯벌·갈대·흑두루미 등 순천만생태자원 사진 전시
2. 세미나실 : 홍보 영상물 상영, 각종 회의(브리핑), 세미나 개최
3. 생태교실 : 생태관련 대중인식증진 프로그램 운영

제21조(자연의소리체험관) 자연의소리체험관 운영시설은 소리체험관, 에코사운드, 인포메이션 등이며 자연에서 서식하는 조류, 포유류, 저서동물 등

의 다양한 자연의 소리 체험 기능을 수행한다.

제22조(순천만공예특산품관) ① 시장은 방문자에게 기념이 되고 순천만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과 지역 특산품을 위탁받아 판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자와 협의하여 위탁판매수수료를 결정한다.

③ 순천만습지위원회는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과 지역특산품을 선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12.30>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을 판매하는 종사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23조(순천만쉼터·낭트쉼터) ① 시장은 관람객에게 휴식처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순천만쉼터·낭트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농산물 등 우리 농산물 취급을 우선하여야 한다.

제24조(순천만천문대) ① 순천만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하고 다만, 월요일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천문대의 운영시설은 천체투영실, 과학전시실, 주관측실 등이며 천체관측과 연구 및 철새 관찰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제4조의 관람시간 이후에 천문대를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관람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일 입장권 소지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순천만 자연생태 조사 및 연구개발
2. 국·내외 자연생태 연구에 관한 세미나 개최
3. 관련 업무 위임·위탁 또는 용역사업 수행
4.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수행

[본조 신설 2016.12.30]

제26조(주차장) ① 시설 내의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차장 운영 시간
11월 ~ 2월	08:00 ~ 17:00
3월 ~ 4월, 9월 ~ 10월	08:00 ~ 18:00
5월 ~ 8월	08:00 ~ 19:00

②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표 4에 따른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 또는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원 차량 : 면제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 면제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면제
4.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표지판을 부착한 차량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직접 운전 또는 탑승할 경우 : 면제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주차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 면제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이용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주차장 이용시간
2. 주차장명, 주차제한차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시간 또는 기간을 정하여 주차료를 면제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주차장 관리자는 시설을 관람 또는 사용하려는 목적 이외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를 거부하거나 견인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제26조로 조문이동 2016.12.30]

제27조(순천만 생태체험선) ① "순천만 생태체험선"(이하 "생태체험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운항한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기상악화 등 관람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날
3. 체험선의 고장 등 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날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날

② "생태체험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5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며 별도의 좌석이 필요하지 않은 3세 이하의 아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생태체험선의 경유지,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을 따로 정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이용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⑤ 시장은 생태체험선 운항약관을 따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적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6조에서 제27조로 조문이동 2016.12.30]

제28조(운영요원) ①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도사 등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세미나, 교육 강좌 등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3. 운영요원으로서 품위를 심히 손상하게 한 사람
4.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

[제27조에서 제28조로 조문이동 2016.12.30]

제29조(관리 운영의 위탁) 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순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에서 제29조로 조문이동 2016.12.30]

## 제5장 순천만습지위원회

제30조(설치)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자문과 순천만 관련 공익적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순천만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9조에서 제30조로 조문이동 2016.12.30]

제3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업무 담당 국소장과 순천만습지 관할구역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순천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3명
2. 국내·외 생태환경 전문가
3. 생태관광분야 전문가
4.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대표, 언론인 등

[제30조에서 제31조로 조문이동 2016.12.30]

제3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1.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에 대한 자문
2. 순천만 습지관리계획 수립
3. 순천만 관련 공익적 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4. 순천만생태계보전지구 내 NGO 참여범위 설정
5. 순천만 람사르 사이트 운영 및 세계자연유산등록 추진
6.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시설 관련 수익사업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8. 제5조 제2항의 관람료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10.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하는 사항

[제31조에서 제32조로 조문이동 2016.12.30]

제3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 대표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2조에서 제33조로 조문이동 2016.12.30]

제3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에서 제34조로 조문이동 2016.12.30]

제3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개최시기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추가 개최할 수 있다.

[제34조에서 제35조로 조문이동 2016.12.30]

제3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순천시 공무원 중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순천시 공무원 중 위원회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8.10.01>

[제35조에서 제36조로 조문이동 2016.12.30]

제37조(자문위원 및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한 안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임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6조에서 제37조로 조문이동 2016.12.30]

제38조(수당 등) 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에서 제38조로 조문이동 2016.12.30]

## 제6장 보칙

제3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순천시 주차장 조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8조에서 제39조로 조문이동 2016.12.30]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에서 제40조로 조문이동 2016.12.30]

부칙 <조례 제1625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타목 및 같은 호 버목 중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순천만습지”로 한다.

② 순천시 순천만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를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로 하고, 제10조 중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를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로 하고,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를 "순천만습지위원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00호, 2016.12.15>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유효기간내의 통합입장권을 제시한 경우 제1항의 관람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 ⑤ <생략>

부칙 <조례 제1704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0호, 2017.04.21.>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11호 중 “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를 “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⑤ ~ · <생략>

부칙 <조례 제1897호, 2018.04.10>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제1조~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관람권을 구입한 자에게 한시적으로 관람료의 일부를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상품권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수입금을 관람료 수입으로 하고, 상품권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구분하여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운용할 수 있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관람료(제5조 관련)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10,000원	6,000원	4,000원
단체	8,000원	5,000원	3,000원
순천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1년권	• 성인 : 30,000원, 청소년·군인 : 20,000원, 어린이 : 10,000원 • 순천시민 : 10,000원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할인 등 기타 중복 할인은 불가함

※ 성인 개인, 성인 단체 관람권을 구입한 자에게 3,000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 제공

<비 고 >

1. “어린이”란 초등학교 및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성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  
로  
대상으로 한다.
5.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6. “1년권”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 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기한) 제5조제2항은 2019. 12. 31.까지 시행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파급 효과를 감안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21호, 2018.10.0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70호, 2018.12.31>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관람료(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제5조 관련)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8,000원	6,000원	4,000원
단체	6,000원	5,000원	3,000원
순천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1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 : 30,000원, 청소년·군인 : 20,000원, 어린이 : 10,000원</li> <li>• 순천시민 : 10,000원</li> </ul>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및 기타 중복 할인 불가

<비 고 >

1. “어린이”란 초등학교 및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 및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5.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말한다.
6. “1년권”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별표 2]

관람료 면제(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제6조 관련)

1. 국민·외국사절단 및 그 수반자
2.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인 자로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실업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만, 유공자 중 அரச직사의 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 및 5·18민주유공부상자
6. 「실업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결정서를 소지한 자
8. 근친의 날에 입장하는 국민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9.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지의 유족 또는 의장자 및 그 가족 다만, 의장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10.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중”을 소지한 세대주 및 세대원
11. 「순천시 경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로서 순천시민이나 순천시민에게 경기 및 인체조직 등을 기증한 다른 지역 거주자
1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생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13. 학생 교육 활동을 위해 단체 입생하는 경우 입생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초·중·고교원
1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된 순사랑지도원 및 순사랑지도위원
15.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5]

이 용 료(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제27조 관련)

구 분		이용료	비고
순 천 만 생태체험관	성 인	만 19세 이상	7,000원
	청소년	만 13세 ~ 만 18세	5,000원
	어린이	만 3세 ~ 만 12세	2,000원

부칙 <조례 제2015호, 2019.07.01>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2호, 201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7호, 2020.11.18>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른, 유효기간내의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을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관람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 ④ (생략)

부칙 <조례 제2226호, 2020.12.3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1호, 2021.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개정 2018.12.31>

**이 용 료(제27조 관련)**

구 분			이용료	비고
순 천 만 생태체험선	성 인	만 19세 이상	7,000원	
	청소년	만 13세 ~ 만 18세	3,000원	
	어린이	만 3세 ~ 만 12세	2,000원	

#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89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3. 3. 6.

## 1.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재활용선별시설 정의 신설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중 ‘재활용시설’을 ‘재활용선별시설로’ 개정

## 3. 개정안 : 별첨

## 4. 관련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 31. ~ 2.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1. 26.(가족복지과-291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1. 19.(기획예산실-88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1. 31.(순천시 공고 제2023-209호)

#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활용선별시설”이란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2호 중 “재활용시설”을 “재활용선별시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u>&lt;신 설&gt;</u></p> <p>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 (3)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1. (생략)</p> <p>2.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u>재활용 시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재활용선별시설</u>”이란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p> <p>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재활용 선별시설</u></p>

## 참고

## 관련 법령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 □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2조(재활용시설) 제1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별시설(분리선별, 비중차선별, 부유선별, 풍력선별, 광학선별 등의 기계적 방법 등으로 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맞게 선별하는 시설로서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흘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선별시설에 한정한다.)

#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89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3. 3. 6.

## 1. 개정이유

- 상수도 요금감면 등에 관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 물 절약 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사용량 절감에 따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극심한 가뭄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수도 요금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기준 명확히 규정(안 제40조제1항)
  - (제2호)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질 사유가 아닌 급수관 파열 또는 동파 등으로 인한 옥내누수인 경우
  - (제10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11호)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 (제12호)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제한 급수 등), 가뭄에 대비하여 물 절약 수용기에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개정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수도법」 제38조
- 「지방자치법」 제136조, 139조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참고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 26. ~ 2. 15.)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1. 20.(가족보육과-2514)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1. 25.(기획예산실-1007)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1. 26.(순천시 공고 제2023-194)

##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수도사용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로 발견이 곤란한 때(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를 “수도사용자 등이 책임질 사유가 아닌 급수관 파열 또는 동파 등으로 인한 옥내누수인 경우” 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호 및 제8호” 를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 로 한다.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정용 3세제곱미터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11. 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 가정용 3세제곱미터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제한 급수 등), 가뭄에 대비하여 물 절약 수용가에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수도사용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로 발견이 곤란한 때(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u> : 정상사용 3개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다만, 감면신청 기간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p> <p>3. ~ 9. (생략)</p> <p>10. <u>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수도사용자 등이 책임질 사유가 아닌 급수관 파열 또는 동파 등으로 인한 옥내누수인 경우</u> ----- ----- ----- ----- ----- -----</p> <p>3. ~ 9. (현행과 같음)</p> <p>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u>가정용 3세제 공급터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세제공급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u></p>



#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 2. 비용추계의 전제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3명 이상)의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 중 월3m<sup>3</sup>에 해당하는 요금감면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0	0	0	0	0	0
세입(a)	412,065	82,413	82,413	82,413	82,413	82,413
시비 (일반회계)	412,065	82,413	82,413	82,413	82,413	82,413
세출(b)	412,065	82,413	82,413	82,413	82,413	82,413
시비 (특별회계)	412,065	82,413	82,413	82,413	82,413	82,413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412,065	82,413	82,413	82,413	82,413	82,413
시비 (일반회계)	412,065	82,413	82,413	82,413	82,413	82,413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원)

요 목	가구	업종	감면금액	소요 금액	산출기초
총 계	2,999			82,412,520	
장애인	210	가정용	2,290	5,770,800	2,290원x 210가구x12월
다자녀가구	2,789	가정용	2,290	76,641,720	2,290원x2,789가구x12월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맑은물관리센터 맑은물행정과 과장 최광수(☎ 749-6433)  
 상하수요금팀장 장다순(☎ 749-6486)

#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89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3. 3. 6.

## 1. 개정이유

-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 등에 관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의 하수도 요금감면 대상 확대(안 제28제1항)
  - (제7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8호)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 3. 개정안 : 별첨

## 4. 관련법령

- 「하수도법」 제65조
- 「지방자치법」 제136조, 139조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참고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 26. ~ 2. 15.)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1. 20.(가족보육과-2514)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1. 25.(기획예산실-1007)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1. 26.(순천시 공고 제2023-195)

##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호 및 제4호” 를 “제1호, 제4호, 제7호, 제8호”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호까지” 를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 로 한다.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8.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제28조)

감 면 대 상	감 면 기 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전액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사용료의 20%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8.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 공공하수도 부과액 = 공공하수도 사용료 - 감면액(감면기준에 따른 금액)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②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방공기업 회계로 보전한다.</p> <p>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p>	<p>제28조(감면 등) ①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p> <p>8.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p> <p>② ---제1호, 제4호, 제7호, 제8호 ----- -----.</p> <p>③ -----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p>																				
<p>[별표 7] &lt;개정 2020.11.18&gt;</p> <p style="text-align: center;"><b>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제28조)</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감면대상</th> <th style="width: 50%;">감면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td> <td>가정용 3세대급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대급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td> </tr> <tr> <td>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액</td> </tr> <tr> <td>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용료의 20%</td> </tr> </tbody> </table> <p>※ 공공하수도 부과액 = 공공하수도 사용료 - 감면액(감면기준에 따른 금액)</p>	감면대상	감면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3세대급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대급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전액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사용료의 20%	<p>[별표 7] &lt;개정 2020.11.18&gt;</p> <p style="text-align: center;"><b>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제28조)</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감면대상</th> <th style="width: 50%;">감면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td> <td>가정용 3세대급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대급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td> </tr> <tr> <td>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액</td> </tr> <tr> <td>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용료의 20%</td> </tr> <tr> <td>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td> <td>가정용 3세대급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대급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td> </tr> <tr> <td>8.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td> <td>가정용 3세대급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대급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td> </tr> </tbody> </table> <p>※ 공공하수도 부과액 = 공공하수도 사용료 - 감면액(감면기준에 따른 금액)</p>	감면대상	감면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3세대급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대급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전액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사용료의 20%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용 3세대급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대급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8.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가정용 3세대급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대급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감면대상	감면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3세대급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대급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전액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사용료의 20%																				
감면대상	감면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3세대급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대급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전액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사용료의 20%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용 3세대급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대급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8.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가정용 3세대급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대급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안 제28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

## 2. 비용추계의 전제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3명 이상)의 가정용 하수도요금 월3m<sup>3</sup>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감면

## 3. 비용추계의 결과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0	0	0	0	0	0
세입(a)	<b>342,790</b>	68,558	68,558	68,558	68,558	68,558
시비 (일반회계)	342,790	68,558	68,558	68,558	68,558	68,558
세출(b)	<b>342,790</b>	68,558	68,558	68,558	68,558	68,558
시비 (특별회계)	342,790	68,558	68,558	68,558	68,558	68,558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b>342,790</b>	68,558	68,558	68,558	68,558	68,558
시비 (일반회계)	342,790	68,558	68,558	68,558	68,558	68,558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원)

요 목	가구	업종	감면금액	소요 금액	산 출 기 초
총 계	2,999			68,557,140	
장애인	210	가정용	1,905	4,800,600	1,905원x 210가구x12월
다자녀가구	2,789	가정용	1,905	63,756,540	1,905원x2,789가구x12월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맑은물관리센터 맑은물행정과 과장 최광수(☎ 749-6433)  
 상하수요금팀장 장다순(☎ 749-6486)